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47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서지영 · 송언석 · 최수진
김대식 · 추경호 · 조승환
이인선 · 서천호 · 서일준
곽규택 · 김미애 · 김승수
정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용전력 요금은 주택용 · 일반용보다 낮지만 여전히 산업용 · 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교육기관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전기요금이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인재 양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용전력 요금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 · 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상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제7항 및 제17조의3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등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용전력 요금과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전기요금의 경감)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기

요금 경감 등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의3에 따른 전기요금 경감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등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u> <u>⑦ 제6항에 따른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용전력 요금과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7조의3(전기요금의 경감)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u>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2. (생략)	<u>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 제49조(기금의 사용)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7조의3에 따른 전기요금 경감 지원</u> 5. ~ 12. (현행과 같음)
---	--